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235-270  
<https://doi.org/10.29212/mh.2018..108.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영돈\*

1. 서 론
2. 간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조중 변계조약>의 논리체계상의 의의
3. <조중 변계조약> 이전의 주요 쟁점들
4. <조중 변계조약> 이후의 쟁점들
5. 결 론

## 1. 서 론

간도에 관한 연구는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분쟁사적 연구 외에도 이주사, 외교사, 국제관계사, 일제침략사, 항일독립운동사, 개척사, 경제사, 생활사, 교육사, 언어문학사, 문화사, 언론사, 체육사, 종교사 등 관점에서 역사적 고찰은 물론 현대에서의 중국의 두만강개발이나, 연룡도

\*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延龍圖)전략, 장길도(長吉圖)전략 등 중국의 동북개발전략과 관련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단행한 소위 동북공정이 외형상 동북지역 역사에 대한 순수한 학술적 연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국사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폭발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어졌다<sup>1)</sup>.

이 논문은 간도문제 중에서 간도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를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현재의 시점에서 간도영유권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인식해야 할 점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간도영유권문제와 관련한 연구만 해도 그 내용도 복잡하며 그 양도 방대하여 간단히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1962년 <조중 변계조약>과 1964년 <조중 변계 의정서>를 통하여 양측의 국경문제를 획정한 것을 계기로 그 논의와 연구의 주제와 쟁점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현재의 관련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이러한 쟁점 변경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조중 변계조약의 논리체계상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 변계조약으로 인하여 왜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논의의 주제와 쟁점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중 변계조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그 이전에는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주제와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논의되고 있거나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쟁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중국의 동북공정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종래에는 국내에서는 간도영유권문제는 꾸준하였으나 일부 관심있는 논자들에게 의하여 제기되고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개인의 블로그가 엄청나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단체로 간도학회가 창립되고, 또 민간단체로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설립되어 논문, 단행본, 학술대회, 자료전시회, 교육홍보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의 관심과 연구가 생산되었다.

## 2. 간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조중 변계조약>의 논리 체계상의 의의

북한과 중국은 1962년 10월의 <조중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와 <조중 변계조약>, 1964년 3월의 <조중 변계의정서>라는 일련의 합의와 조약을 통하여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국경을 획정하였고, 현재 양측은 이들 조약에 근거한 국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그 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이견과 대립이 있어 왔던 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회담을 가진 결과 모두 8개항의 기본합의를 하여 다음 날인 10월 3일 이를 <조중 대표단의 국경문제에 관한 회담기요>라는 명칭으로 문서화하여 서명하였으며, 같은 날 서명과 함께 발효하였다.

이 <회담기요>를 기초로 1962년 10월 12일 <조중 변계조약>을 서명하였는데, 이 변계조약은 동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데(동 조약 제4조), 그 비준서를 교환한 날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이 변계조약은 동 조약 체결 후 즉시 양국 국경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조약에 의거해 국경을 실지조사하고, 경계 푯말을 세우고, 국경하천 중의 도서와 사주의 귀속을 확정 후 의정서를 작성하고 국경지도를 제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 조약 제4조). 이에 따라 1964년 3월 20일 <조중 변계의정서>를 서명하였는데, 이 변계의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동 의정서 제21조) 이 날로부터 발효하였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sup>2)</sup>.

2) 그런데 이들 조약과 관련하여 중국 국내에서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문건자료들이 결핍되어 확인할 수 없는데,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다면

북한과 중국 간의 이 조약들은 유효한 조약으로서 양측 모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에는 국제법상 당연하다. 이 조약들의 의의는 1909년의 <청일 간도협약>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다. 즉 <청일 간도협약>은 한중 국경을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으로 하였는데, 이로써 그 간 조선과 청간에 있었던 간도영유권분쟁은 간도가 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귀결시켰다. 이 선이 <조중 변계조약> 체결 이전까지 현실적으로 유지되면서, 중국측은 간도협약을 근거로 삼았고, 한국측에서는 간도협약이 무효이고 이를 중국에 통보하고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동안 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 논의는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간도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시점에서의 국가 간의 국경의 획정은 관련국 간에 과거의 국경이나 판도가 어떠했느냐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련국을 구속하는 유효한 합의에 기초한 국경조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일응 현재 국경조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경조약이 유효한 것이라면 그 국경도 유효하며, 반대로 그 국경조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국경도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그 동안 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관한 논의들은 현재의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의 국경을 1909년의 <청일 간도협약>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청일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따져본 결과 이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근거가 된 것이다<sup>3)</sup>. 다시 말하여 이 <청일 간도협약>을

동 조약들은 중국 국내법상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6%9C%9D%E8%BE%B9%E7%95%8C%E6%9D%A1%E7%BA%A6>(2017.10.18. 검색) 참고. 만약 실제로 중국이 이들 조약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이유에 서든지 장차 중국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리로 이들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될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적 검토의 자세한 내용은 노영돈, 1995,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통하여 확정된 조선과 청 간의 국경이 현재까지도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 간의 유효한 국경인 것처럼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경은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이므로 이 국경도 무효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 자체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의 의미는 그것이 무효이므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그 이전의 상태’란 조선과 청 간의 간도영유권을 두고 다투던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분쟁상태’는 다시 간도영유권문제의 ‘미해결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 간의 미해결의 간도영유권문제는 양측 간의 유효한 합의에 기초한 조약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해결의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이 1962년과 1964년의 <조중 변계조약>과 <조중 변계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에는 결과적으로 간도영유권문제가 해결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문제는 <조중 변계조약>과 <조중 변계의정서>(이하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의 편의상 <조중 변계조약>만을 적시함)에 의하여 해결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논의와 연구의 주제와 쟁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즉 <조중 변계조약> 이전에는 종래의 대부분의 간도영유권 논의의 전제와 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로 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조중 변계조약> 이후에는 그것이 일응 북한과 중국이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또는 이를 무효화(또는 실효)시킨 유효한 조약이므로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로 그 주제와 쟁점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청일 간도협약>은 한국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조중 변계조약>으로 북한과 중국에 의해서도 이미 무효 또는 실효된 것이어서 더 이상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논증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논의는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

한국의 간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61~84쪽 참고.

라서 현 시점에서는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현재의 중국의 간도 점유가 <청일 간도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 협약이 무효이므로 중국의 간도 점유는 법적 권원이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국제법상의 시효나 역사적 응고, 묵인 등의 논리에 의한 중국의 간도영유권의 확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러한 점이 간도영유권문제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에 있어서의 <조중 변계조약>의 의의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적으로 과거에 주효하게 논의되었던, 예컨대 <백두산정계비>의 설치경위나 효력이나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경위나 효력 등, 간도영유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나 관점에 대한 연구들은 장차 있을 수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국경획정의 기회가 생길 경우 훌륭한 시사점이나 근거를 제공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조중 변계조약> 이후의 논의와 연구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소위 비밀조약이라는 점에서 비밀조약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그 통일국가가 이들 조약을 승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논자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북한과 중국이 <조중 변계조약>과 <조중 변계의정서>의 체결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비밀조약이었던 탓에 이들 조약의 체결 직후부터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수는 없었다<sup>4)</sup>. 이들 조약의 전문이 한국에 알려져 북한과 중국 간 국경획정

의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두고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가능하게 된 시점은 2000년 10월이었다<sup>5)</sup>. 따라서 굳이 언급하자면 법리상으로는 <조중 변계조약> 이전과 이후의 연구의 쟁점이 달라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연구의 쟁점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들 조약의 전문이 한국에 알려진 2000년 이후일 수밖에 없었다.

이하에서는 <조중 변계조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적절한 연구쟁점들을 안배하여 간도영유권과 관련된 연구현황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3. <조중 변계조약> 이전의 주요 쟁점들

비공개조약인 <조중 변계조약>이 한국에 알려진 1999년 이전에는 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이로부터 출발하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생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초반에는 간도영유권문제를 포함하여 북방영토 전반에 관하여 사학적, 외교사적 및 정치학적 접근의 연구가 주류였으며, 논문

4) 중국측에서는 <조중 변계조약>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조약으로 한 경위를 “북측(북한)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조약의 체결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통일 전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를 요구하였고, 또 변계획정과정에서 중국측이 상당히 크게 양보하였으므로 중국도 이를 공개할 의향이 없었으며, 다만 공개발행된 <진의(陈毅)연보>와 <주은래(周恩来)연보>에 변계담판이 있었음을 기재하였다”고 하는 설도 있다.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6%9C%9D%E8%BE%B9%E7%95%8C%E6%9D%A1%E7%BA%A6> (2017.10.18. 검색).

5) 이들 조약의 전문을 한국측이 입수하여 언론에 처음 공개된 것은 2000년 10월이다 (중앙일보, 2000년 10월 16일자 및 같은 해 10월 18일자). 한편 이들 조약의 전문은 아니나 그 내용의 대강을 구건으로 파악하여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한 것은 1999년이다(중앙일보, 1999년 10월 21일자). 이들 조약들은 조문(북한어)과 중문(중국어)으로 각각 작성되었는데, 북한어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 함께 단행본의 출판도 잇달았으며<sup>6)</sup>, 간도문제와 관련한 사료들의 수집하여 정리한 자료집도 많았다<sup>7)</sup>. 이 당시의 연구는 <청일 간도협약>을 무효로 보고 간도영유권문제가 지나간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안임을 규명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현안임을 그 근거와 함께 계몽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쳐 국제냉전체제의 상황 하에서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한편으로는 상호 대결이 심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통일과정에서 또는 통일 후의 과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국제상황에서보다 당시가 시간적으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초기 연구성과들을 기초로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 후에는 기존 연구자들이 그 간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

6)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신기석, 1979,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양태진, 1981, 『한국의 국경연구』, 동화출판공사; \_\_\_\_\_, 1989, 『한국변경사연구』, 범경출판사; \_\_\_\_\_, 1994, 『우리나라 영토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김득황, 1987, 『백두산과 북방강계』, 사사연; 육락현 편, 1987,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 백산자료원; 이명용, 1990, 『말 못하는 영토권 변수』, 보문사; 유정갑, 1991, 『북방영토론』, 범경출판사; 김득황, 1993, 「조선의 북방강계에 관하여」 『백산학보』 제41호, 137~144쪽; 노계현, 1976, 「간도는 누구 땅이냐?」 『한국외교사연구』, 해문사, 180~212쪽; \_\_\_\_\_, 1984,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교사론』, 대왕사, 32~110쪽; \_\_\_\_\_, 2005, 「간도영유권문제와 그 대처방안」 『한민족의 북방영역-오늘과 내일』, 북방문제연구소, 153~358쪽.

7) 대표적인 자료집으로는 국회도서관, 1975,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 양태진, 1979, 『한국국경영토관계문헌집』, 갑자문화사 등이 있다. 또 『백산학보』에는 창간 이래 간도영유권과 관련한 방대한 분량의 사료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는데, 이들을 편집하여 발간된 것이 있다. 육락현 편, 1993, 『간도영유권관계자료집 1 및 2』, 백산문화. 또 한국의 영토관계 문헌목록도 정리되어 출판된 것도 있다. 양태진, 1983, 「한국영토관계 문헌목록」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1~216쪽; \_\_\_\_\_, 1985, 「한국영토관계문헌목록(문서편)」 『영토문제연구』 제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79~236쪽.

8) 국토통일원, 1969, 『백두산 및 간도지역의 영유권의 문제』.



결과도 나타났으며<sup>9)</sup>, 또한 젊은 차세대 연구들의 참여로 그 지평을 넓히면서 발전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소위 ‘동북공정<sup>10)</sup>’은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하에서는 한국에 <조중 변계조약>이 알려지기 전의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연구현황을 몇 가지 주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 가.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이 시기 간도영유권 주장의 기본적인 근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에 있었다. 이는 현재의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의 국경으로 되어 있는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선은 <청일 간도협약>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중 변계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물론이고, <조중 변계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당연한 것이었다<sup>11)</sup>.

간도영유권문제가 영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국제법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다<sup>12)</sup>.

9) 예컨대 노계현, 1997, 『조선의 영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_\_\_\_\_, 2006, 『간도영유권분쟁사』, 한국연구원.

10)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한 소위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의 사업이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일한 맥락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 동북공정을 정식으로 결정한 것은 이미 1999년 9월이다. 東北師範大學 東北民族与疆域研究中心-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1999, 『東北民族与疆域研究』, 1999年 第3期, 12頁 참고.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한국측에서 처음 인지한 곳은 언론계이며, 그 사실을 처음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이다.

11) 1962년과 1964년 <조중 변계조약>과 <조중 변계의정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그것이 비밀조약이어서 추측되지만 중국측 자료에서도 현재의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의 국경의 법적 근거를 <청일 간도협약>이라고 하는 문헌도 있었다. 高永一, 1989, 『中國朝鮮族歷史研究 參考資料匯編』 第1集, 延邊大學出版社, 410頁 참고.

12) 일부 논자는 간도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역사적으로 소급하여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의 우리 민족의 판도에 두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한족)의 판도를 비교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미 종래에도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검토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이 시기 국제법적 관점에서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리적 기초가 확립되었다<sup>13)14)</sup>. 그 외에도 국제법적 관점에서 간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의 문제나 시효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었다<sup>15)16)</sup>.

- 
- 13) 김명기, 1985,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고시계』 1985년 9월호, 132~144쪽; 이일걸, 1992,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81~208쪽; 노영돈, 전제논문 주3), 61~84쪽; \_\_\_\_\_, 1995,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영역 및 국경에 관한 연구」 『19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V)』, 통일원; \_\_\_\_\_, 2000, 「소위 간도협약의 법적 효력」 『인천법학논총』 제3집,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53~70쪽; \_\_\_\_\_, 2004,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간도학보』 창간호, 143~174쪽; 남동현, 2006,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과 Cyber VANK의 기능」 『과학기술법연구』 제11집 제2호, 243~299쪽.
- 14) 그런데 나중에 간도협약의 무효에 근거한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간도협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간도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며 긍정론자의 오해라고 하는 회의적인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자의 지적은 간도협약의 무효에 대한 긍정론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즉 긍정론자들의 연구 의도는 기본적으로 간도협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이전의 상태인 분쟁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장차 한국과 중국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양국은, 적어도 교섭 초기에는, 과거 감계회담에서와 같이 서로 대립적으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게 될 상황이 반복될 것임이 예견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측에서 과거보다는 보다 강화된 근거와 논리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이와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한국 정부가 간도영유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회의론자는 긍정론자의 논조를 간도협약의 무효로 바로 간도가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스스로 회의적인 입장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출발점에서 여타의 문제에서도 회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 15) 노영돈, 1998, 「간도문제와 국제법」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57~196쪽; \_\_\_\_\_, 2009,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백산학보』 제84호, 백산학회, 217~229쪽; \_\_\_\_\_, 2005,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 시효문제」 『백산학보』, 제71호, 백산학회, 473~494쪽; 정경수, 2010, 「간도협약과 취득시효」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373~404쪽; 이석우, 2005,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론적 제언」 『백산학보』 제72호, 백산학회, 261~189쪽; \_\_\_\_\_, 2006,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 『백산학보』 제74호, 백산학회, 295~340쪽; 이범관, 2010, 「청일 간도협약의 부당성과 간도영유권문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검토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이 간도영유권문제의 본래의 당사국인 대한제국과 청 간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청 간에 체결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는 1905년 소위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교섭권을 일본이 대행하였기 때문이었는데,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을사보호조약>이 조약으로서의 성립요건인 조약체결절차의 완료문제에 있어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비준은 물론 일본의 명치천황의 비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으로 성립하지 못하여 무효인데다가, 또 <을사보호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일본의 이등박문(伊藤博文)이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강박하였기 때문에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으로서 조약의 효력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렇게 무효인 <을사보호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교섭권을 대행하여 일본이 체결한 <청일 간도협약>도 권한이 없는 일본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로 설사 <을사보호조약>을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조약으로 일본이 대행할 수 있는 외교권은 외교교섭권만이며 조약체결권은 여전히 대한제국에 있었으므로(동 조약 제1조), 간도영유권문제를 처리하는 간도협약은 대한제국과 청 간에 체결되었어야 하므로 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을사보호조약>의 규정에 위배하여 권한 없는 일본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또 <을사보호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대한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는데(동 조약 제2조), 일본이 분쟁 중에 있는 간도영유권을 청에 넘겨주는 처분을 한 것은 대한제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일본의 권한의 범위를 넘

---

제의 해결방안(중)』 『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265~281쪽.  
 16) 그런데 법리적 검토에 따른 근거의 제시도 없이 간도협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견해도 있었다. 이성환, 2008,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 - 「간도협약」의 재검토를 통해서」 『동북아 문화연구』, 제1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563~588쪽.

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점이다.

셋째로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을 이상의 <을사보호조약>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 대한제국에 구속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국제조약법상 “서약은 제3자에게 이롭게도 해롭게도 하지 않는다(*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는 원칙에 의하여 동 조약의 제3국인 대한제국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넷째로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1952년의 <중일 평화조약>에서 “중국(국민당정부)과 일본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 조약 제4조) 1909년 체결된 <청일 간도협약>도 무효가 되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한편 전술한 바의 <청일 간도협약> 무효론은 결국 현재의 상태를 <청일 간도협약> ‘이전의 상태’, 즉 ‘간도영유권분쟁 미해결 상태’로 귀결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미해결상태’를 전제로 간도협약의 체결 전후에 있어서 일본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나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의 전후, 간도문제에 대한 일본과 청의 교섭과정, 간도문제와 관련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쟁탈 상황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7)</sup>. 이로써 <청일 간도협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17) 노계현, 1966, 「간도협약에 관한 외교사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11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55~182쪽; 이일걸, 1990,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한중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일청교섭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56쪽; \_\_\_\_\_, 1992, 「한청변계선후장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31~144쪽; \_\_\_\_\_, 1998, 「간도협약과 간도영유권 문제」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42~100쪽; 최장근, 1998, 「일본의 간도분쟁 개입과 청일간도문제 교섭과정 및 그 의의」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01~156쪽; \_\_\_\_\_, 2015, 「간도의 중국관할 경위-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제4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69~292쪽; \_\_\_\_\_, 2009, 「일제의 간도정책에 관한 성격 규명-「조선 간도 경영 안」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43집, 대한일어일문학회, 353~364쪽; \_\_\_\_\_, 2017, 「일제의 간도침략 의도와 ‘동부 동간도’ 명칭의 생성에 관한 검증」 『일본근대학연구』 제5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사실과 사정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 외에도 국제법적으로 영유권분쟁에서 증거로 제기되는 지도의 증거력문제를 국제법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도 있었다<sup>18)</sup>. 한국 정부의 간도영유권 주장이 소홀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이 간도협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인 것에 즈음하여 영토귀속과 국제법상의 시효문제를 비롯하여 한국 정부에 간도영유권 주장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법적 연구도 있었다<sup>19)</sup>.

## 나. 감계회담과 관련하여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이면, 그 의미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289~306쪽; 이성환, 2017, 「일본의 간도정책-일본외교문서를 중심으로(1906~1909)」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185~206쪽; 박선영, 2007, 「역사의 운명-간도협약 체결의 역사와 현장」 『중국사연구』 제49호, 중국사학회, 261~273쪽; \_\_\_\_\_, 2009, 「간도협약의 역사적 쟁점과 일본의 책임」 『중국사연구』 제63집, 역사문화연구소, 167~204쪽; 이규수, 2006, 「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 임시과출소」 『담론201』 제9권 제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63~96쪽; 이왕무, 2016, 「통감부시기 간도의 경계 분쟁과 통감부임시간도과출소의 역할」 『역사와 경계』 제100호, 부산경남사학회, 113~136쪽; 김종현, 2009,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동북아역사논총』 제25호, 동북아역사재단, 7~38쪽; 최덕규, 2008,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 제30호, 역사문화연구소, 203~242쪽; 김원수, 2010, 「간도문제와 간도협약의 글로벌 히스토리, 1907~1909-전 지구적 국제관계와 연계하여」 『사회과교육』 제49권 제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71~82쪽; \_\_\_\_\_,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일본의 만한정책과 연계하여」 『동북아역사논총』 제26호, 동북아역사재단, 263~295쪽; 서길수, 2009, 「간도협약 직전(1908) 청국의 백두산 국경 날조사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3호, 백산학회, 549~600쪽; 이성환, 2006, 「간도문제와 '대고구려국' 구상」 『백산학보』 제74호, 백산학회, 341~370쪽; 조병현, 2011, 「간도영유권 주장의 지적학적 범위 분석」 『백산학보』 제90호, 백산학회, 185~211쪽.

18) 신각수, 1981, 「영토분쟁에 있어서 지도의 증거력-국제관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26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09~136쪽.

19) 김명기, 2009, 「국제법상 중국의 간도불법점거에 대한 대중국 항의의 필요성과 요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5집, 백산학회, 343~367쪽; 이일걸, 2013, 「한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 분석」, 2013년 12월 19일 한국 간도학회 학술세미나 『간도영유권 분쟁의 제 문제 분석』, 1~35쪽.

게 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상태라는 것은 조선과 청 간에 간도영유권을 두고 분쟁상태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다. 조선과 청 간에는 <청일 간도협약> 직전인 1885년과 1887년에 각각 정해감계회담과 을유감계회담을 가졌다. 이는 조선과 청이 간도영유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양국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조선과 청 양국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두 차례의 감계회담에서 양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미해결로 남게 된 상태에서 일본이 개입하여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이 무효이므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간도영유권문제가 분쟁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현대 한국(북한 포함)과 중국 간에도 간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즉 이로써 법리적으로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로 그 이전의 상태가 분쟁상태라고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는 조선과 청의 양국 간의 간도영유권분쟁의 발단과 관계된 것이기도 한데, 이는 일본이 간도영유권문제에 개입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 및 상태로서 중국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해 날조 또는 조작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으로 호도할 수 없는 것이다.

간도영유권문제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감계회담에 대한 연구는 종래의 연구 속에서도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지만 추가적인 연구도 나왔다<sup>20)</sup>. 특히 간도영유권문제의 발단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초가 된 조선의 북방영토의식의 생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sup>21)</sup>.

20) 임계순, 1989, 「백두산 정계비와 조·청간의 을유·정해 국경회담」 『한국의 북방 영토』, 백산자료원, 12~41쪽; 박성순, 2014, 「한청간 간도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동양학』 제56집, 동양학연구원, 73~101쪽.

## 다.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이면, 그 이전의 일응 조선과 청 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라고 보이는 백두산정계비가 문제된다.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두산정계비상의 “토문”강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다.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위압록 동위 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고 하여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중 토문강에 대하여 조선과 청의 이해가 달랐는데, 조선은 토문강은 실재하는 강으로 흑룡강의 지류인 송화강의 지류의 하나라고 이해했던 반면 청은 토문강은 두만강이라고 이해하여 결국 간도영유권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은 감계회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에 백두산을 답사하여 경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분수령을 찾아 그 분수령을 경계로 삼기로 하고, 실제 백두산을 답사하여 천지 동남 쪽에 분수령을 발견하여 그 지점에 백두산정계비를 설치하면서 그 비문에 “...그리하여 분수령 상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라고 하여 그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분수령인 지점은 조선이 주장하는 토문강에 인접해 있으며, 청이 주장하는 두만강의 어떤 지류와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두만강의 어떤 지류의 발원지에도

21) 조광, 1974, 「조선후기의 변경의식」 『백산학보』, 제16호, 백산학회, 147~184쪽; \_\_\_\_\_, 1989, 「조선후기 영토의식의 전개와 그 이상」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11쪽; 양태진, 1984, 「민족지연(民族地緣)으로 본 백두산 영역고찰」, 『백산학보』, 제28호, 백산학회, 146쪽; 김경춘, 1984, 「조선조 후기의 국경선에 대한 일고」, 『백산학보』, 제29호, 백산학회, 5~32쪽; 강석화, 1996,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발전과 북방영토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2~216쪽; 이명중, 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4호, 동아시아문화연구소, 311~344쪽; \_\_\_\_\_, 2014, 「17·18세기 조선에서 ‘만주=故土’의식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8호,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13~238쪽;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제43호, 동양학연구원, 339~357쪽; 이범관, 2010, 「조청 국경정계교섭과 북방영토의식에 관한 연구(하)」 『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지적학회, 225~241쪽.

분수령이 없다는 사실이 조선의 주장에 신빙성을 갖게 한다. 감계회담 시 청은 백두산정계비상의 ‘분수령’이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이 정계비를 두만강에서 토문강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 백두산정계비 설치 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의 잠류구간에 장차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경계표시하라는 청의 목극 등의 요구로 조선이 토퇴와 석돈을 쌓았는데, 이 토퇴와 석돈이 청이 주장하는 두만강이 아니라 조선이 주장한 토문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조선의 주장에 신빙성을 갖게 한다. 감계회담 시 청은 이 토퇴와 석돈을 조선측이 두만강에 있던 것을 토문강으로 이전하여 새로 축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2)</sup>. 한편 이러한 토문강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속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후에도 새로운 연구도 나타났다<sup>23)</sup>.

22) 한국에서의 회의론자 중에는 백두산정계비 설치 시 당초 청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청측이 주장하는 두만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한국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경계의 확정하러 가는 청측의 의도가 설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었다고 해도 이는 청의 일방적인 의도에 불과하며, 실제 양국의 대표가 만나서 합의한 바의 분수령이 경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즉 백두산정계비를 그 자리에 세우기 전, 양국의 대표들 간에는 분수령을 찾아 그 지점에서 국경을 정하면 그 분수령으로부터 양측으로 갈라져 흐르는 강줄기가 국경이 되고 장차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백두산에 올라 그러한 분수령을 찾기로 합의였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백두산정계비문에도 “따라서 분수령 상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라고 명기되어 있다. 요컨대 이 분수령이 양측이 그 구체적 지점을 이미 정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경계확정의 기준을 정한 합의로 양측을 구속한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합의 이전에 각측에서 각자의 희망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백두산정계비 설치경위에 대해서는 노계현, 2006, 『간도영유권분쟁사』, 한국연구원, 53~72쪽 참고.

23) 유봉영, 1972,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백산학보』 제13호, 백산학회, 73~134쪽; 박용옥, 1985, 「백두산정계비 건립의 재검토와 간도영유권」 『백산학보』 제31호, 백산학회, 215~230쪽; 이일걸, 2014, 「백두산정계비 설치의 숨겨진 실상—동위토문 서위압록의 실체 규명을 중심으로」, 2014년 12월 9일 한국간도학회 창립 10주년 학술회의 발표문, 13~44쪽;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호, 한



또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한 논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의 문제, 즉 이를 양국 간의 합의를 기록한 것으로 오늘날 말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양국의 대표들이 함께 조사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정계비의 비문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청의 목극등의 뜻에 따라 목극등 일행만 분수령을 찾아 백두산에 등반하였고, 조선의 대표인 박권은 올라가지 못하고 조선측에서는 하급군관과 통역관만 대동한 채 청측의 대표만이 일방적으로 올라가 정하였으므로 국가 간의 합의로 보기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백두산정계비의 양국간의 경계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와 아울러 감계회담 시에 청측에 의해서도 백두산정계비의 경계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되었던 사실이 원용되기도 한다<sup>24)</sup>.

또 백두산정계비 이전의 조선과 청의 국경에 의하면 압록강 이북의 소위 서간도와 두만강 이북의 소위 동간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였는데, 백두산정계비에서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정함으로써 이를 조약으로 본다면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는 중국에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백두산정계비가 조약이 아닌 것이 되면, 그 당연한 귀결로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영토의 범위는 서간도도 포함되게 되어 크게 넓어진다. 이러한 논리에서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서간도에서의 조선의 주권행사 사실을 밝히는 연구도 있었다. 즉 조선인의 간도지방으로의 진출은 동간도로부터 시작하여 서간도에 이르게 되는데, 조선에서도 서간도에 호구조사를 하는 등 서간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밝히는 연구도 있었다<sup>25)</sup>.

국정신문화연구원, 91~118쪽; 이화자, 2011, 『한중국경사 연구』, 해안, 2011.

24) 이일걸, 2009, 「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회고와 전망」 『백산학보』 제85호, 백산학회, 203~267쪽.

25) 양태진, 1992, 『1902년 간도변계호적안』, 법경출판사; 임학성, 2013, 「20세기 초 ‘간도’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에 대한 호구조사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제30집, 한국학연구소, 357~384쪽; \_\_\_\_\_, 2014, 「20세기 초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들의

이와는 달리 백두산정계비가 현재 알려져 있는 위치가 아닌 보다 북쪽에 설치되었어야 한다는 색다른 연구도 나왔다. 즉 한국, 중국, 일본과 서양의 고지도와 관련 사료를 분석해 본 결과 청의 시조산인 ‘장백산(長白山)’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백두산이 아니며, 청이 시조산이라고 여기는 ‘장백산’은 휘발하 부근에 있고, 이 ‘장백산’에서도 ‘토문’이라는 명칭의 강이 존재함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두산정계비의 백두산에서 토문강이 발원하는 것과 비슷한 지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청측이 이용하여 현재의 백두산에 정계를 하려 하였고, 당시 조선측에서는 정계에 임함에 있어서 백두산의 답사를 막으려고 하였다는 것을 그 반증으로 지적하고 있다<sup>26)</sup>. 이에 다르면서 간도와 동간도 양측이 모두 조선의 영토라는 귀결에 이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백두산정계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심도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라. 고지도와 관련하여

고지도는 영유권분쟁에 있어서 일국의 영토적 권원을 입증하는 주요한 사료의 하나이다. 1990년대 이래 학문적 도구의 발달로 고지도들이 대량 발굴 또는 입수되어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7)</sup>.

---

생활양태-“楚山江北戶籍”(1902) 자료의 분석 사례 『동북아역사논총』 46호, 동북아역사재단, 192~220쪽; 김우준, 2004, 「유럽 사료를 통해 본 서간도문제」 『간도학보』, 창간호, 간도학회, 193~206쪽; 이돈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 속에 나타난 북방영토」 『간도학보』 창간호, 간도학회, 245~279쪽.

26) 이돈수, 상계논문.

27) 김영관, 1999,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검토-『新訂分道大韓帝國地圖』(1908)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53호, 백산학회, 397~411; 이돈수, 상계논문; \_\_\_\_\_, 2013, 「외국고지도에 나타난 ‘토문강’을 통해본 조청 국경 연구」, 2013년 12월 19일 한국간도학회 학술세미나 「간도영유권 분쟁의 제 문제 분석」, 51~79쪽; 김우준, 전계논문 주 25; 이재은-양보경, 2011,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한중국경

그런데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지도들은 간도의 영토적 귀속을 표현함에 있어서 한국에 유리한 것도 있고 중국에 유리한 것도 있으며, 모호한 것도 있다. 그러나 서양의 고지도들에서는 확일적으로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양고지도는 조선과 청의 경계를 압록강 하구 북쪽에서 시작하여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의 일정한 지역에 양국의 국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에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고, 두만강 이북의 일정한 지역에 국경을 묘사하거나 그 국경이 분쟁 중이라고 표기한 것도 발견된다.

서양고지도에 조선과 청의 국경이 정확하게 묘사된 것은 청국에 파견되어 있던 예수회 소속 프랑스인 선교사 레지(Pere Regis)에 의한 지도가 최초이다. 이는 근대적인 측량법에 의해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자 청의 강희제의 명에 의하여 1708년부터 1717년에 걸쳐 중국의 각 지역과 만주, 조선을 답사하여 측량하고 1717년에 완성하여 강희제에게 헌정된 것이다. <중국전지Description de l'Empire de la China>에 실린 레지의 비망록인 “조선왕국에 관한 지리적 고찰”에는 “봉황성 동쪽에는 조선국 서쪽의 국경이 있다. 그런데 만주(여진족, 즉 청)는 중국(명)을 공격하기에 앞서 조선과 싸워 이를 정

---

및 만주-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의 서양 지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1~35쪽; 정인철, 2016,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與地全圖)」를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의 북방영토」, 『한국지도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지도학회, 1~11쪽; 안중욱, 2017, 「백두산 부근 지도의 경계 표시 현황과 기원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지리학회, 175~194쪽; 박선영, 2006, 「소련이 ‘간도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획정’한 중화민국 외교부 사료와 간도문제에 대한 연구과제」, 『중국사연구』 제43집, 중국사학회, 291~303쪽; \_\_\_\_\_, 2007, 「서간도, 동간도가 명기된 참모본부 지도에 대하여: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새롭게 발견한 간도 자료」, 『동양사학연구』 제101호, 동양사학회, 299~318쪽; \_\_\_\_\_,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2호, 중국사학회, 199~234쪽; \_\_\_\_\_, 2008, 「중화민국 내정부 지도로 본 백두산정계비-중화민국 중앙연구원에서 새롭게 발굴한 간도 자료」, 『동양사학연구』 제105호, 동양사학회, 295~313쪽.

복했으나, 그 때 장책과 조선 국경 사이에 무인지대를 두기로 의정하였다. 이 국경은 지도상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와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를 모두 조선의 영토라고 하고 있다. 그 후의 서양 각국의 지도들에도 양국의 국경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 서양 각국들이 조선과 청의 국경을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압록강-백두산정계비-토문강 선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 1712년 백두산정계비의 내용과는 다른데, 그러한 상이함의 연유나 어느 쪽이 진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

#### 4. <조중 변계조약> 이후의 쟁점들

##### 가.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과 의의

<조중 변계조약> 체결 이전에 북한과 중국 간에 국경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1962년 <조중 변계조약>과 1964년 <조중 변계의정서>를 통하여 양측은 국경문제를 해결하였다.

<조중 변계조약>과 <조중 변계의정서>를 통하여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획정한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국경을 압록강-백두산천지-두만강을 기본틀로 하였다. 우선 백두산지구에서는 그 시작점을 압록강 상류의 시령하와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하여 1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이어서 천지까지 5호 국경표지를 세우고 천지의 그 맞은편에 6호 국경표지를 세워 천지를 분할하고, 이어서 두만강 최북쪽의 지류인 홍토수로 연결하여 20호 국경표지까지 세웠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어서는 이들이 국경하천임을 명시하고, 이 국경하

천에서의 국경은 원칙적으로 수면의 폭을 국경으로 하여 ‘선(線)’이 아니라 ‘면(面)’을 국경으로 하였으며, 또 압록강 상의 205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27개가 북한에, 78개가 중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두만강 상의 246개 도서와 사주 중에서 137개가 북한에, 109개가 중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모두 451개의 도서 및 사주 중에서 264개가 북한에, 187개가 중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끝으로 압록강 하구지역에서는 우선 압록강과 서해를 구분하는 강해분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영해기선으로 하여 해상분계선을 결정하였고, 이 영해기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일정한 해역을 자유항행구로 설정하였다.

2000년 <조중 변계조약>의 전문이 한국측에 입수된 후 이들 조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해 정리된 연구가 나왔으며, 그 번역본도 나왔다<sup>28)</sup>.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간도협약의 무효로 인하여 간도영유권분쟁은 그 이전의 상태, 즉 미해결의 상태가 되고, 따라서 관계국간 유효한 새로운 합의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조중 변계조약>은 이를 해결하는 유효한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 때 국제냉전시기에는 과거 조선과 청 간의 간도영유권분쟁의 당사국인 조선과 중국이 모두 분단되어 한국은 남쪽의 대한민국정부와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로 나뉘어 있고, 중국은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만의 중화민국정부로 나뉘어 있는 상황, 북한과 중공이 수교하고 대만과 남한이 수교해 있는 상황, 그리고 문제의 간도는

28) 노계현-노영돈, 2005,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과 그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부용역보고서; 박선영, 2005, 「비밀의 해부-조선과 중국의 국경 조약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8집, 중국사학회, 195~224쪽; 노영돈, 2008,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제82호, 백산학회, 229~261쪽; 최장근, 2009,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11~225쪽; 심지화-박종철, 10012, 「중-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아태연구』 제19권 제1호, 국제지역연구원, 33~74쪽; 동북아역사재단, 2007, 『中-朝, 中-蘇, 中-蒙 關係條約, 協定, 議定書 집성』 .

현실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접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문제가 현실적인 고심거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로 교체되고, 또 1991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써 유엔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국가로 되었고, 이어 1992년의 한중 수교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봄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보게 되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국가로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조중 변계조약>을 포함하여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조중 변계조약>이 체결된 이상, 그것이 역사적으로 조선과 청 간에 있었던 간도영유권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나. 미등록조약으로서의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문제

이러한 현실에서 간도영유권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다룰 수 있는 법리적 쟁점으로는 그것이 미공개된 비밀조약, 유엔과의 관계에서는 조약의 등록제도와 관계에서 미등록조약으로서의 효력문제와 또 장차 남북한이 통일 될 경우 그 통일 방식에 따라 조약의 국가승계문제가 될 것이다.

미등록조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적 연구도 이미 있었다<sup>29)</sup>. 유엔헌장에 의하면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관에 대하여도 이를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유엔헌장 제102조), <조중 변계조약>은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미등록된 상태에서 유엔의 기관에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

29) 노계현-노영돈, 상계용역보고서, 42~46쪽.

는 것과 같이 된다. 그러나 이 등록제도는 당사국간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못하여 결국 북한과 중국 간에는 유효한 조약이 된다. 따라서 <조중 변계조약>의 존재나 효력이 무력해지는 상황이란 북한과 중국 간에 아닌 한국과 중국 간에, 그리고 유엔에서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 다. <조중 변계조약>의 국가승계문제

반면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그 통일국가의 <조중 변계조약>의 승계 문제는 주요한 사안이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이미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sup>30)</sup>. 만약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할 경우에는 당연히 <조중 변계조약>은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에는 남한이 <조중 변계조약>을 승계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독일의 통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외의 제3의 통일방식의 경우에도 그 방식에 따라 승계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국제법학계에서는 남북한 통일 시 <조중 변계조약>의 승계

30) 노계현-노영돈, 상계용역보고서, 46~53쪽; 김명기, 2006, 「통일한국의 북중 국경선 조약의 승계에 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4권 3-4호, 외교부, 31~41쪽; \_\_\_\_\_, 2011,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 문제」 『2011 남북 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이현조, 2007,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191~199쪽; 정인섭, 2007, 「통일 후 한러국경의 확정」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55~88쪽; 이근관, 2010,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 대한국제법학회, 117~144쪽; 이장희, 2011,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백산학보』 제91호, 백산학회, 243~286쪽; 송병진, 2014, 「북중국경조약과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승계 문제」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3~44쪽; 이진규, 2015, 「남북한 통일 시 조약 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37~361쪽.

와 관련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즉 국경조약, 영토할양조약, 국경 체제조약 등은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의 하나인 현상 유지의 원칙(또는 *uti possidetis*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조중 변계조약>도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조약의 국가승계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견해(‘승계론’)와 반대로 실정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 시 그 통일방식에 따라서는 조약의 국가승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견해(‘불승계론’)로 갈리어 있다.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하여 보면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은 승계유형에 따라 승계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약은 1978년 채택되었는데, 이 협약의 발효요건을 15개국 이 비준 또는 가입하면 그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49조). 그런데 이 발효요건을 충족한 것은 1996년이고, 2017년 현재 이 협약의 당사국은 22개국에 불과한데, 이는 이 협약이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약일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북한, 한국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이 협약은 남북한 통일 시 <조중 변계조약>의 승계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승계론’이 현상유지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이거나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하는데, 또 이러한 경향의 국제판례도 몇 개 존재하지만, ‘불승계론’은 국경조약 등이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학에 있어서도 인정론과 부정론, 그리고 절충론이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실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주로 과거 제국주의국가들에 의해 형성된 전통국제법의 입장이고, 공산주의 국제법이나 제3세계 국제법에서는 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에서는 과거



제국주의국가들이 상호 획정한 국경이 문제가 되어 국경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 이러한 문제를 소위 승계협정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하므로 <조중 변계조약>이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독일 통일 시 통일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 처리에 대하여도 그 해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연합국들은 패전국인 독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독일의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할양토록 하여 1950년 동독과 폴란드는 국경선조약(Gorlitzer Vertrag)을 체결하여 오데르-나이췌(Oder-Neiße) 선을 국경으로 하였다. 그런데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후 통일독일은 폴란드와 새로운 국경선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ren bestehenden Grenze)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래의 오데르-나이췌(Oder-Neiße) 선을 양국의 국경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승계론’은 1990년의 국경선조약을 현상유지의 원칙에 따라 이를 확인한 조약이라고 이해하는 반면, ‘불승계론’에서는 이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0년의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선조약이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독일이 통일을 위하여 국제정세 속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 것이며, 또 당연히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면 1990년 국경선조약은 당초에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이 조약은 소위 승계협정의 한 예로 이해한다.

요컨대 남북한 통일 시 <조중 변계조약>의 승계문제는 법리적 관점에서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략 또는 정책의 관점에서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이 진행되었고, 그 성과도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전반에 북한과 중국 간에 <조중 변계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런데 이들 조약이 비공개조약이었던 때문에 한국측에서는 그 사실을 2000년에야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모두 <조중 변계조약>을 통하여 <청일 간도협약>을 법리상 무효화시키거나 실효시킨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적어도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를 논증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논리체계상 그 방향이나 쟁점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관점에서의 다양한 접근을 통한 연구도 먼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다.

1954년 북경에서 발간된 “舊民主主義革命時代(1840-1919) 帝國主義割取中國嶺土圖<sup>31)</sup>”와 1980년 대만에서 발간된 “清代疆域圖<sup>32)</sup>”에서 공히 현대 중국(대만 포함)의 영토 이외의 여러 접경지역들을 표시하고 이들을 중국이 장차 회복하여야 할 고토(故土)로 하고 있는데, 이에는 한반도를 전자는 “1895年 獨立, 1910年 併於日”이라 기재하고, 후자는 “1636年 太宗平定, 1895年 認其獨立, 1897年 改名大韓帝國, 1910年 日併改稱朝鮮”이라고 기재하여 한반도도 중국이 회복하여야 할 고토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국경은 움직인다”는 말로 결론에 대신한다. 즉 국경선은 유효한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기는 하

31) Luke T. Chang, 1982, 『China's Boundary Treaties and Frontier Dispute』, Oceana Publications, p. 217에서 전재. 이 지도는 1954년 북경에서 발간된 『A Short History of Modern China(現代中國簡史)』라는 중국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이다.

32) 張其昀 監修, 程光裕-徐聖謨 主編, 1980, 『中國歷史地圖』 上冊, 中國文化大學出版部(臺灣), 69~70頁.

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하고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유효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4. 22, 심사수정일 : 2018. 8. 10,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간도, 백두산정계비, 감계회담, 청일 간도협약, 조중 변계조약, 을사 조약, 조약의 국가승계, 비밀조약, 조약의 등록, 영토분쟁

## <참 고 문 헌>

- 김동욱,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사』 (71), 2009.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발전과 북방영토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국토통일원, 『백두산 및 간도지역의 영유권의 문제』, 1969.
- 국회도서관, 『간도영유권관계발취문서』, 1975.
- 김경춘, 「조선조 후기의 국경선에 대한 일고」, 『백산학보』, 제29호, 백산학회, 1984.
- 김득황, 『백두산과 북방강계』, 사사연, 1987.
- \_\_\_\_\_, 「조선의 북방강계에 관하여」 『백산학보』 제41호, 1993.
- 김명기,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고시계』 1985년 9월호, 1985.
- \_\_\_\_\_, 「통일한국의 북중 국경선 조약의 승계에 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제4권 3-4호, 외교부, 2006.
- \_\_\_\_\_, 「국제법상 중국의 간도불법점거에 대한 대중국 항의의 필요성과 요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5집, 백산학회, 2009.
- \_\_\_\_\_,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 문제」 『2011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1.
- 김영관,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검토- 『新訂分道 大韓帝國地圖』 (1908)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53호, 백산학회, 1999.
- 김우준, 「유럽 사료를 통해 본 서간도문제」 『간도학보』, 창간호, 간도학회, 2004.
- 김원수,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일본의 만한정책과 연계하여」 『동북아역사논총』 제26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_\_\_\_\_, 「간도문제와 간도협약의 글로벌 히스토리, 1907~1909-전지구적 국제관계와 연계하여」 『사회과교육』 제49권 제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0.  
<http://uci.or.kr/G704-001280.2010.49.1.002>
- 김종현,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동북아역사논총』 제25호, 동북아역사재단, 2009. <http://uci.or.kr/G704-002002.2009..25.001>

- 남동현,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과 Cyber VANK의 기능」 『과학기술법연구』 제11집 제2호, 2006. <http://uci.or.kr/G704-SER000013422.2006.11.2.003>
- 노계현, 「간도협약에 관한 외교사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11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966.
- \_\_\_\_\_, 「간도는 누구 땅이나?」 『한국외교사연구』, 해문사, 1976.
- \_\_\_\_\_,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교사론』, 대왕사, 1984.
- \_\_\_\_\_, 『조선의 영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간도영유권문제와 그 대처방안」 『한민족의 북방영역-오늘과 내일』, 북방문제연구소, 2005.
- \_\_\_\_\_, 『간도영유권분쟁사』, 한국연구원, 2006.
- 노계현-노영돈, 「조-중 변계조약의 내용과 그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부 용역보고서, 2005.
- 노영돈,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5.
- \_\_\_\_\_,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영역 및 국경에 관한 연구」 『19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V)』, 통일원, 1995.
- \_\_\_\_\_, 「간도문제와 국제법」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998.
- \_\_\_\_\_, 「소위 간도협약의 법적 효력」 『인천법학논총』 제3집,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_\_\_\_\_,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간도학보』 창간호, 2004.
- \_\_\_\_\_,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와 국제법상 시효문제」 『백산학보』, 제71호, 백산학회, 2005.
- \_\_\_\_\_,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제82호, 백산학회, 2008.
- \_\_\_\_\_,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백산학보』 제84호, 백산학회, 2009. <http://uci.or.kr/G704-001252.2009..84.002>
- 노영돈이현미, 「중국의 두만강지역개발 및 출해권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9호, 백산학회, 2011. <http://uci.or.kr/G704-001252.2011..89.007>
- 동북아역사재단, 『中-朝, 中-蘇, 中-蒙 관계條約, 協定, 議定書 집성』, 2007.
- 박선영,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2호, 중국사학회, 2004.

- \_\_\_\_\_, 「비밀의 해부-조선과 중국의 국경 조약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8집, 중국사학회, 2005.
- \_\_\_\_\_, 「소련이 ‘간도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획정’한 중화민국 외교부 사료와 간도문제에 대한 연구과제」 『중국사연구』 제43집, 중국사학회, 2006.
- \_\_\_\_\_, 「서간도, 동간도가 명기된 참모본부 지도에 대하여: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새롭게 발견한 간도 자료」 『동양사학연구』 제101호, 동양사학회, 2007.
- \_\_\_\_\_, 「역사의 운명-간도협약 체결의 역사와 현장」 『중국사연구』 제49호, 중국사학회, 2007.
- \_\_\_\_\_, 「중화민국 내정부 지도로 본 백두산정계비-중화민국 중앙연구원에서 새롭게 발굴한 간도 자료」 『동양사학연구』 제105호, 동양사학회, 2008.
- \_\_\_\_\_, 「간도협약의 역사적 쟁점과 일본의 책임」 『중국사연구』 제63집, 역사문화연구소, 2009.
- 박성순, 「한청간 간도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전망」 『동양학』 제56집, 동양학연구원, 2014. <http://doi.org/10.17320/orient.2014..56.73>
- 박용옥, 「백두산정계비 건립의 재검토와 간도영유권」 『백산학보』 제31호, 백산학회, 1985.
- 배성준,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제43호, 동양학연구원, 2008. <http://doi.org/10.17320/orient.2008..43.339>
- 서길수, 「간도협약 직전(1908) 청국의 백두산 국경 날조사건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83호, 백산학회, 2009. <http://uci.or.kr/G704-001252.2009..83.020>
- 송병진, 「북중국경조약과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승계 문제」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신각수, 「영토분쟁에 있어서 지도의 증거력-국제관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26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981.
-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1979.
- 심지화-박종철, 「중-북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아태연구』 제19권 제1호, 국제지역연구원, 2012. <http://doi.org/10.18107/japs.2012.19.1.002>
- 안중욱, 「백두산 부근 지도의 경계 표시 현황과 기원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한국지리학회, 2017.

- 양태진, 『한국국경영토관계문헌집』, 갑자문화사, 1979.
- \_\_\_\_\_, 『한국의 국경연구』, 동화출판공사, 1981.
- \_\_\_\_\_, 『한국영토관계 문헌목록』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_\_\_\_\_, 「민족지연(民族地緣)으로 본 백두산 영역고찰」, 『백산학보』, 제28호, 백산학회, 1984.
- \_\_\_\_\_, 「한국영토관계문헌목록(문서편)」 『영토문제연구』 제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 \_\_\_\_\_, 『한국변경사연구』, 법경출판사, 1989.
- \_\_\_\_\_, 『1902년 간도변계호적안』, 법경출판사, 1992.
- \_\_\_\_\_, 『우리나라 영토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 유봉영,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 『백산학보』 제13호, 백산학회, 1972.
- 유정갑, 『북방영토론』, 법경출판사, 1991.
- 육락현 편, 『간도영유권관계자료집 1 및 2』, 백산문화, 1993.
- \_\_\_\_\_, 1987,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 백산자료원, 1987.
- 이강원,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7.
- 이규수, 「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 임시과출소」 『담론201』 제9권 제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 이근관,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 대한국제법학회, 2010.
- 이돈수, 「18세기 서양고지도 속에 나타난 북방영토」 『간도학보』 창간호, 간도학회, 2004.
- \_\_\_\_\_, 「외국고지도에 나타난 ‘토문강’을 통해본 조청 국경 연구」, 2013년 12월 19일 한국간도학회 학술세미나 『간도영유권 분쟁의 제 문제 분석』, 2013.
- 이명용, 『말 못하는 영토권 변수』, 보문사, 1990.
- 이명중,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4호,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 \_\_\_\_\_, 「17·18세기 조선에서 ‘만주=故土’ 의식의 출현과 전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8호,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 이범관, 「청일 간도협약의 부당성과 간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안(중)」 『한국지적

- 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2010.
- \_\_\_\_\_, 「조청 국경정계교섭과 북방영토의식에 관한 연구(하)」 『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지적학회, 2010.
- 이석우,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론적 제언」 『백산학보』 제72호, 백산학회, 2005.
- \_\_\_\_\_,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 『백산학보』 제74호, 백산학회, 2006.
- 이성환, 「간도문제와 ‘대고구려국’ 구상」 『백산학보』 제74호, 백산학회, 2006.
- \_\_\_\_\_,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時論)적 연구-‘간도협약’의 재검토를 통해서」 『동북아 문화연구』, 제1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_\_\_\_\_, 「일본의 간도정책-일본외교문서를 중심으로(1906~1909)」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17.
- 이왕무, 「통감부시기 간도의 경계 분쟁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의 역할」 『역사와 경계』 제100호, 부산경남사학회, 2016.
- 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한중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일청교섭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한청변계선후장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1992.
- \_\_\_\_\_,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2.
- \_\_\_\_\_, 「간도협약과 간도영유권 문제」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998.
- \_\_\_\_\_, 「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회고와 전망」 『백산학보』 제85호, 백산학회, 2009.
- \_\_\_\_\_, 「한국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 분석」, 2013년 12월 19일 한국간도학회 학술세미나 『간도영유권 분쟁의 제 문제 분석』, 2013.
- \_\_\_\_\_, 「백두산정계비 설치의 숨겨진 실상-동위토문 서위압록의 실제 규명을 중심으로」, 2014년 12월 9일 한국간도학회 창립 10주년 학술회의 발표문, 2014.
- 이장희,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백산학보』 제91호, 백산학회, 2011.
- 이재은-양보경,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한중국경 및 만주-티메카코리아웹사이



- 트의 서양 지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 이진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 이현조,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혜안, 2011.
- 임계순, 「백두산 정계비와 조·청간의 을유정해 국경회담」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989.
- 임학성, 「20세기 초 ‘간도’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에 대한 호구조사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제30집, 한국학연구소, 2013.
- \_\_\_\_\_, 「20세기 초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들의 생활양태-“楚山江北戶籍”(1902) 자료의 분석 사례」 『동북아역사논총』 46호, 동북아역사재단, 2014.
- 정경수, 「간도협약과 취득시효」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정인섭, 「통일 후 한러국경의 획정」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 정인철,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與地全圖)』를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의 북방영토」 『한국지도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지도학회, 2016.
- 조광, 「조선후기의 변경의식」 『백산학보』, 제16호, 백산학회, 1974.
- \_\_\_\_\_, 「조선후기 영토의식의 전개와 그 이상」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989.
- 조병현, 「간도영유권 주장의 지적학적 범위 분석」 『백산학보』 제90호, 백산학회, 2011.
-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 제30호, 역사문화연구소, 2008.
- 최장근, 「일본의 간도분쟁 개입과 청일간도문제 교섭과정 및 그 의의」 『한국의 북방영토』, 백산자료원, 1998.
- \_\_\_\_\_, 「일제의 간도정책에 관한 성격 규명- 「조선 간도 경영 안」 을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 제43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 \_\_\_\_\_, 『통일한국'에 있어서 '조중변계조약의 위상-정치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 \_\_\_\_\_, 『간도의 중국관할 경위-篠田治策의 간도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제4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5.
- \_\_\_\_\_, 『일제의 간도침략 의도와 '동부 동간도' 명칭의 생성에 관한 검증』 『일본근대학연구』 제5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 Luke T. Chang, 『China's Boundary Treaties and Frontier Dispute』 , Oceana Publications, 1982.
- 東北師範大學 東北民族与疆域研究中心-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東北民族与疆域研究』 , 1999年 第3期, 1999.
- 高永一, 『中國朝鮮族歷史研究 參考資料匯編』 第1集, 延邊大学出版社, 1989.
- 張其昀 監修, 程光裕-徐聖謨 主編, 『中國歷史地圖』 上冊, 中國文化大學出版部 (臺灣), 1980.

<Abstract>

## The Point Issues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Gando and the Meaning of Border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f 1962

Loh, Yeong-d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Gando was claimed as a diplomatic issue between Choson(Korea) and Qing(China) in 1880's. In the state which the issue was not solved by the two parties, Qing and Japan concluded the 'Gando Agreement' in 1909 and Choson could not set things righ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from 1910 to 1945. After Korea was liberated and divided into two Koreas in 1945 and the two Koreas formed each governments, the Gando issue was considered in an aspect of the unification of nation or territory,

The studies on the Gando issue had been focused on verification for the invalidity of Gando Agreement of 1909 to indicate that present situation which seems that Gando vests in China is illegal or unrightful and so a new valid treaty is required, as good as 1880's treaty, to replace the invalid Gando Agreement. And also various related studies have proceeded such as on the intention of Japan in the process of the treaty an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Gando to confirm and emphasize Korea's title to Gando.

Meanwhile, the DPRK(North Korea) and the PRC(China) concluded a border treaty in 1962, but they agreed not to make public and not to register with the UN Secretariat. This secret treaty was obtained by chance by South Korea and reviewed its legal aspect

with the confirmation of fact. According to th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Gando belonged to China but North Korea benefited in Cheonji(천지) Lake and Tumen River comparing to the Agreement of 1909. But this treaty is completely valid between the two parties in legal aspect.

Since th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f 1962 nullified or invalidated the agreement between Qing and Japan of 1909, since then or at least after 2000 when the treaty became known to South Korea, the study to verify the invalidity of the agreement of 1909 in South Korea side from a legal point of view.

Based on these criteria, the previous issues and the following issues are classified; the former includes, for example, the invalidity of the Gando Agreement, border-demarcation talks between Choson and Qing in 1880's, border monument on Baekdusan Mountain and old maps drew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western European countries. Whereas the fact that the treaty has never registered with the UN Secretariat does not allow the two parties to invoke it before the UN bodies according to Article 102 of the UN Charter and the matter of state succession of the treaty will come into question, which there is no established rule in international law about, therefore, should b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law policy as an issues of the latter.

Key words : Gando, Baekdusan Boundary Monument, border-demarcation talk between Korea and China, Gando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Border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tate Succession of a Treaty, Secret Treaty, Registration of a Treaty, Territorial Dispute, Boundary Dispute